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623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750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제8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623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4. 26 선고 2001나43143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미A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A)

【피고,상고인】농업협CAC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C 담당변호사 유BB)

【원심판결】서울지법 2002. 4. 26. 선고 2001나43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일종의 공적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기관인 피고로서는 위 기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용보증규정 등에 위배한 신용보증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고에게도 신용보증을 거부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보정을 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신용보증의뢰서와 신용조사서를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행한 후 신용보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신용보증신청을 심사하여 신용보증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피고에게 있는 점, ② 연대보증인 입보에 관한 업무가 원고에게 위탁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자연인에 대한 3,000만 원 이상의 대출임이 신용보증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신용보증규정을 제정한 주체인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은 이 사건 신용보증신청이 신용보증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는 점을 별다른 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아C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담당 직원은 이를 간과한 채 신용보증규정에 위배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한 점, ④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여하게 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제도로써, 이 사건과 같이 신용보증신청서 자체에서 신용보증규정에 위배되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서 신용보증을 거부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보정을 지시할 주의의무(신용보증규정 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주의의무이다)를 부담한다고 보여지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을 면책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중 3,500만 원 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담당 직원이 신용보증규정에 위배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한 잘못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3,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로서도 연대보증인 입보에 관한 업무가 원고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을 의뢰함에 있어서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1,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신용보증규정에 위배되는 신용보증을 한 피고의 행위가 신용보증서를 믿고 대출을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그 전제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규정에 따라 보증심사를 제대로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여하게 하는 제도로써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것이고 원고를 통하여 제출된 신용보증신청을 심사하여 신용보증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신용보증규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하여 신용보증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심사결과 신용보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거부 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의 가부를 심사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의 입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원고를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신용보증신청이 신용보증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위하여 보증심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담당 직원이 신용보증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한 것은 불법행위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